

()검사확인증

발행번호: 제 호

신청인	대표자 성명		전화번호
	회사명 또는 상호		
	주소		
검사결과	검사전기설비		
	검사연월일		
	검사자	소속	성명
	판정	(다음 검사: 년 월)	
임시사용	허용사유		
	사용기간		
	사용범위 및 사용방법		

기 타
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

검사신청인 귀하

작성방법

- 판정은 합격, 부분합격, 임시사용 등으로 적습니다.
- 임시사용란은 판정이 임시사용인 경우에 적습니다.